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954호 2024. 3. 6.(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4-33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48호선, 공공청사:거창지원, 거창지청)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24-34호	남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9
거창군 고시 제2024-35호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1
거창군 고시 제2024-36호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 고시	13
거창군 고시 제2024-37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20
거창군 고시 제2024-38호	도로명주소 고시	2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4-365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가조 천주교 일원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	23
거창군 공고 제2024-366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가조 수월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27
거창군 공고 제2024-368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웅양면 운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
거창군 공고 제2024-369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개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3
거창군 공고 제2024-385호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6
거창군 공고 제2024-399호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7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19호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안내(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작 및 설치)	65

회 랑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48호선, 공공청사:거창지원, 거창지청)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6-26호(2016.3.3.)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중로 2-48호선)과 경상남도 고시 제2016-73호(2016.3.3.)로 최종 결정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 거창지원, 거창지청)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024. 3. 5.

거 창 군 수

1. 변경 개요 : 사업기간 지정
2. 사업개요(변경없음)

종류	사 업 명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거창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거창	가지, 상림	계					46,256					
				중로	2	48	200	15	3,392	거창읍 가지리 1345-62	거창읍 상림리 411-4	'16.3.3. 거창군고시 2016-26호		
				공공청사(거창지청)						22,593	거창읍 가지리 1354-27	거창읍 상림리 702-8	'16.3.3. 경남고시 2016-73호	
				공공청사(거창지원)						20,271	거창읍 가지리 1345-52	거창읍 상림리 410-1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4. 사업기간

- 2023. 8. 28. ~ 2025. 8. 27.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소유권 변동사항 기재)

- 도로(중로2-48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798	3,392	-	-	-	-	-
1	거창읍 가지리	1345-62	전	3	3	-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1345-39	전	245	128	-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1345-54	전	72	72	-	거창군			
4	거창읍 가지리	1345-53	전	73	73	-	거창군			
5	거창읍 가지리	1345-51	전	591	591	-	거창군			
6	거창읍 가지리	1354-28	임	288	288	-	거창군			
7	거창읍 상림리	410-15	전	936	936	-	거창군			
8	거창읍 상림리	412-15	전	56	56	-	거창군			
9	거창읍 상림리	410-18	전	819	819	-	거창군			
10	거창읍 상림리	410-10	전	15	15	-	거창군			
11	거창읍 상림리	410-21	전	7	7	-	거창군			
12	거창읍 상림리	412-17	전	19	19	-	거창군			
13	거창읍 상림리	411-4	전	674	385	-	거창군			

○ 공공청사(거창지청)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2,593	22,593	-	-	-	-	-
1	거창읍 가지리	1354-27	임	3	3	-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1354-1	임	449	449	-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1345-14	전	193	193	-	거창군			
4	거창읍 가지리	1345-13	전	167	167	-	거창군			
5	거창읍 가지리	1345-57	전	32	32	-	거창군			
6	거창읍 가지리	1345-43	전	46	46	-	거창군			
7	거창읍 가지리	1345-49	전	10	10	-	거창군			
8	거창읍 가지리	1345-44	전	848	848	-	거창군			
9	거창읍 가지리	1354-26	임	21	21	-	거창군			
10	거창읍 가지리	1354-23	임	3,447	3,447	-	거창군			
11	거창읍 가지리	1354-24	임	8	8	-	거창군			
12	거창읍 가지리	1345-45	전	3,092	3,092	-	거창군			
13	거창읍 가지리	1345-58	전	60	60	-	거창군			
14	거창읍 가지리	1345-22	전	55	55	-	거창군			
15	거창읍 가지리	1345-23	전	75	75	-	거창군			
16	거창읍 가지리	1345-59	전	25	25	-	거창군			
17	거창읍 가지리	1354-17	임	85	85	-	거창군			
18	거창읍 가지리	1354-21	임	11	11	-	거창군			
19	거창읍 가지리	1345-48	전	1	1	-	거창군			
20	거창읍 가지리	1345-47	전	154	154	-	거창군			
21	거창읍 가지리	1345-46	전	153	153	-	거창군			
22	거창읍 가지리	1345-50	전	28	28	-	거창군			
23	거창읍 가지리	1345-60	전	2	2	-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4	거창읍 가지리	1345-26	전	23	23	-	거창군			
25	거창읍 가지리	1345-25	전	55	55	-	거창군			
26	거창읍 가지리	1345-24	전	114	114	-	거창군			
27	거창읍 가지리	1354-29	임	55	55	-	거창군			
28	거창읍 상림리	410-4	전	169	169	-	거창군			
29	거창읍 상림리	412-4	전	105	105	-	거창군			
30	거창읍 상림리	410-19	전	107	107	-	거창군			
31	거창읍 상림리	410-8	전	261	261	-	거창군			
32	거창읍 상림리	410-22	전	632	632	-	거창군			
33	거창읍 상림리	412-11	전	5,812	5,812	-	거창군			
34	거창읍 상림리	산19-4	임	32	32	-	거창군			
35	거창읍 상림리	412-16	전	1,250	1,250	-	거창군			
36	거창읍 상림리	산21-10	임	365	365	-	거창군			
37	거창읍 상림리	산23	임	298	298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이원종무			
38	거창읍 상림리	산22	임	99	9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이원종무			
39	거창읍 상림리	산21-9	임	1,193	1,193	-	거창군			
40	거창읍 상림리	412-13	전	516	516	-	거창군			
41	거창읍 상림리	412-12	전	4	4	-	거창군			
42	거창읍 상림리	산21-11	임	1,307	1,307	-	거창군			
43	거창읍 상림리	412-14	전	116	116	-	거창군			
44	거창읍 상림리	산25-10	임	48	48	-	거창군			
45	거창읍 상림리	산25-11	임	878	878	-	거창군			
46	거창읍 상림리	703-10	전	33	33	-	거창군			
47	거창읍 상림리	702-7	전	151	151	-	거창군			
48	거창읍 상림리	702-8	전	5	5	-	거창군			

○ 공공청사(거창지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0,696	20,271	-	-	-	-	-
1	거창읍 가지리	1345-52	전	332	332	-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1345-55	전	10	10	-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1345-61	전	72	72	-	거창군			
4	거창읍 가지리	1345-40	전	79	79	-	거창군			
5	거창읍 가지리	1354-25	임	224	224	-	거창군			
6	거창읍 가지리	1345-28	전	985	985	-	거창군			
7	거창읍 가지리	1354-13	임	124	124	-	거창군			
8	거창읍 가지리	1354-22	임	1,137	1,137	-	거창군			
9	거창읍 가지리	산103-1	임	992	992	-	거창군			
10	거창읍 가지리	1343-2	전	248	248	-	거창군			
11	거창읍 가지리	1345-56	전	50	50	-	거창군			
12	거창읍 가지리	1345-3	전	351	351	-	거창군			
13	거창읍 가지리	1297-15	임	164	164	-	거창군			
14	거창읍 가지리	1343-13	전	3,055	3,055	-	거창군			
15	거창읍 가지리	1323-59	전	266	266	-	거창군			
16	거창읍 가지리	산104-1	임	1,006	600	-	거창군			
17	거창읍 가지리	1336-9	전	347	340	-	거창군			
18	거창읍 가지리	산104-12	임	73	73	-	거창군			
19	거창읍 가지리	1343-7	전	849	849	-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0	거창읍 가지리	산104-13	임	1,035	1,035	-	거창군			
21	거창읍 가지리	1343-9	전	114	114	-	거창군			
22	거창읍 가지리	1336-8	전	532	520	-	거창군			
23	거창읍 가지리	1343-3	전	344	344	-	거창군			
24	거창읍 가지리	1343	전	565	565	-	거창군			
25	거창읍 가지리	1343-8	전	238	238	-	거창군			
26	거창읍 가지리	1343-10	전	1,363	1,363	-	거창군			
27	거창읍 가지리	산102-2	임	595	595	-	거창군			
28	거창읍 가지리	1342-1	과	1,022	1,022	-	거창군			
29	거창읍 가지리	산102-7	임	623	623	-	거창군			
30	거창읍 가지리	1343-11	전	268	268	-	거창군			
31	거창읍 가지리	산102-8	임	26	26	-	거창군			
32	거창읍 상림리	410-13	전	1,242	1,242	-	거창군			
33	거창읍 상림리	410-16	전	1,790	1,790	-	거창군			
34	거창읍 상림리	410-14	전	470	470	-	거창군			
35	거창읍 상림리	753-1	도	15	15	-	국 (국토교통부)			
36	거창읍 상림리	410-9	전	50	50	-	거창군			
37	거창읍 상림리	410-17	전	40	40	-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남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남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4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남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남하면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44번지 일원
4. 사업비 : 4,000백만원(균특 2,800, 도비 360, 군비 840)
5. 사업기간 : 2021 ~ 2025년 (5년간)
6. 사업내용 : 세부사업 총괄표 참고
 - (H/W) 남하 거점커뮤니티센터 조성(1층) 연면적 A=623.5㎡
남하 다목적 광장 조성 A=3,754.5㎡
남하면 종합복지회관 시설개선(2층) 연면적 A=361.8㎡
 - (S/W) 교육 및 훈련, 거점 활성화 컨설팅 및 경영지원 등
7.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 담당(☎055-940-8272)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940-5544)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세부사업 총괄표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주요공종	사업비 (백만원)	주요공종	사업비 (백만원)
-	합 계	4,000	합 계	4,000
기초생활 기반확충	남하 거점커뮤니티센터 조성 - 1층 연면적 A=623.5㎡	2,751	남하 거점커뮤니티센터 조성 - 1층 연면적 A=623.5㎡	2,751
	남하 다목적 광장 조성 - 대지면적 A=3,754.5㎡	176	⇒ 남하 다목적 광장 조성 - 대지면적 A=3,754.5㎡	205
	남하면 종합복지회관 시설개선 - 2층 연면적 A=361.8㎡	373	남하면 종합복지회관 시설개선 - 2층 연면적 A=361.8㎡	389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거점 활성화 등	193	교육 및 훈련, 거점 활성화 등	132
부대비용	기본계획, 설계비, 공감비 등	507	기본계획, 설계비, 공감비 등	523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4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남하면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947번지 일원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군특 2,800, 도비 360, 군비 840)
5. 사업기간 : 2023 ~ 2027년 (5년간)
6. 사업내용 : 세부사업 총괄표 참고
 - (H/W) 신원 평생교육센터 조성(2층) 연면적 A=499m²
 - (S/W)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7.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055-940-8272)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940-5544)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세부사업 총괄표

구 분	예비계획	
	주 요 내 용	사업비 (백만원)
-	합 계	4,000
기초생활 기반확충	신원 평생교육센터 신축 - 2층 연면적 A=660㎡ ※ 위치 : 신원면 과정리 947-2번지	2,534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966
부대비용	설계비, 공감비 등	500

⇒

기본계획	
주 요 내 용	사업비 (백만원)
합 계	4,000
신원 평생교육센터 조성 - 2층 연면적 A=499㎡ (신원 사랑누리센터 건물 증축) ※ 위치 : 신원면 과정리 947번지	2,686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684
설계비, 공감비 등	630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3월 5일

거창군수

□ 구성목적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방 소멸대응 성과창출, 공동 발전방향 모색 및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코자 함

□ 구성내용

가. 명 칭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나. 구 성 : 89개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 주요기능

-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
-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등

라. 조직구성

-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 임원선출/임기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 1년(연임가능)

- 실무협의회 : 협의회 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
- ※ 실무협의회장 : 협의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

마. 회의 및 의결

-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1회
-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바. 사무국

- 협의회의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한 사무국 운영
- 필요시 시·군·구에 공무원 파견 요청 가능

사. 부담금

-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
-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에 따른 부담금은 필요시마다 협의하여 결정

붙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1부. 끝.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①협회의 회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별지 제1호서식” 서식에 의한 참여동의서를 제출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주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됨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자동소멸된다.

제4조(사무소)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는 협의회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교류 협력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유출에 대한 재정·세제·규제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 사항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개선사항
5.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지방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및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조직)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이내,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회장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 한해 1명씩 선출한다.

제7조(임원선임 및 임기) ①임원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3.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②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별지 제2호서식” 서식에 의한 출석 및 표결 권한 위임장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심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④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광역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5조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④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시·군·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 등) ①협의회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협의회 회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한다.

②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에는 임원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실무협의회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실무협의회원은 협의회 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사항) ①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임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에 대한 논의 및 정책 건의사항

2.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한 의견 집약 및 조사 연구사업

3. 사무국의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협의회 사무국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2조(의안 및 정족수) ①회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의안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회원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무 국

제13조(사무국)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장 1

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필요시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입안 건의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5조(자문위원) ①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관련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및 기타

제16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군·구의 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기타수입

제17조(부담금) ①부담금은 협의회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②특별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회칙 개정) 협의회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보칙) 이 회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인준된 임원의 임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6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4. 3. 6.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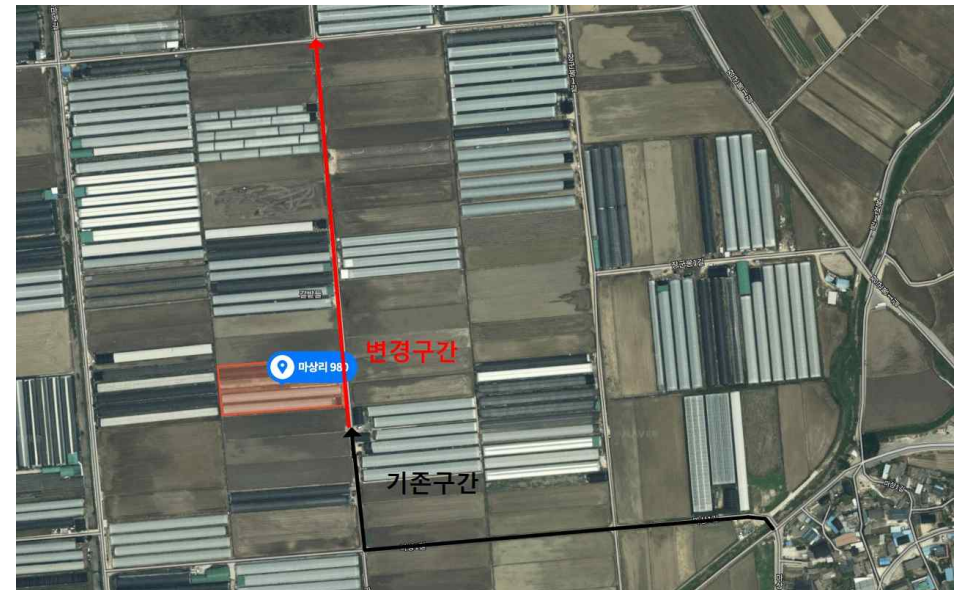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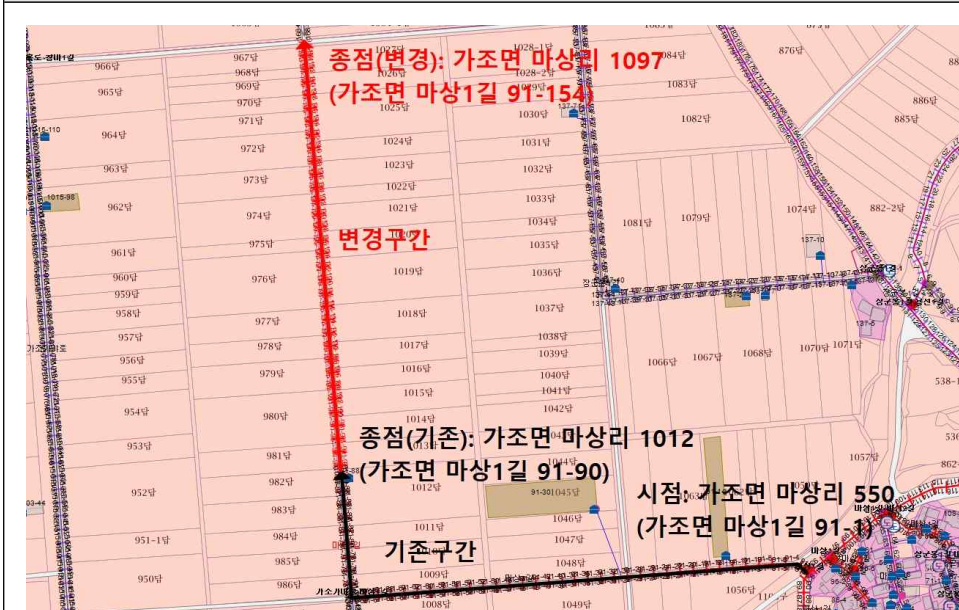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4년 3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가조면	변경 전	마상1길	가조면 마상리 550 (마상1길 91-1)	가조면 마상리 1012 (마상1길 91-90)	도면참조	2	없음	종속구간 변경(연장)	직권
		변경 후	마상1길	가조면 마상리 550 (마상1길 91-1)	가조면 마상리 1097 (마상1길 91-154)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위성사진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71 등 5개소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동3길 112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79-115호(1979.05.24.)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가조 천주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6.

거 창 군 수

1. 사업예정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3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거창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가조 천주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2,08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담당부서: 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4년 8월 2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 내 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 3. 6 ~ 2024. 3. 20.
-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1. 소로3-115호선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현실	공부	대장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계		23필지			15742	2,083					
1	가조면 마상리	236-11	답	답	173	156	-	거창군			
2	가조면 마상리	236-2	도	도	340	67	-	국 (농수산부)			
3	가조면 마상리	235-5	답	답	99	14	-	거창군			
4	가조면 마상리	233-6 (233-11)	답	답	573	109	-	거창군			
5	가조면 마상리	233-9 (233-12)	답	답	364	137	-	거창군			
6	가조면 마상리	230-2 (230-4)	전	전	969	128	-	거창군			
7	가조면 마상리	230-1 (230-3)	대	대	559	109	-	거창군			
8	가조면 마상리	288 (288-1)	대	대	641	14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면 **로 7*	재단법인 마산교주 천주교회 유지재단			
9	가조면 마상리	288 (288-2)	대	대	641	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면 **로 7*	재단법인 마산교주 천주교회 유지재단			
10	가조면 마상리	229-4 (299-8)	대	대	176	1	-	거창군			
11	가조면 마상리	229-4 (299-9)	대	대	176	84	-	거창군			
12	가조면 마상리	229-5 (299-10)	대	대	277	13	-	거창군			
13	가조면 마상리	861-2	도	도	8,347	108	-	국 (건설교통부)			
14	가조면 마상리	223-1	대	대	233	124	-	거창군			
15	가조면 마상리	223-1 (223-5)	대	대	233	109	-	거창군			
16	가조면 마상리	223-2	대	대	42	42	-	거창군			
17	가조면 마상리	223 (223-4)	대	대	290	6	경상남도 거창군 **면 마상*길 *1	대한예수 교장노회 가조교회			
18	가조면 마상리	222-6 (222-9)	대	대	43	7	경상남도 거창군 **면 마상*길 *1	대한예수 교장노회 가조교회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현실	공부	대장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9	가조면 마상리	222-5	대	대	104	104	-	거창군			
20	가조면 마상리	222-7	대	대	3	3	-	거창군			
21	가조면 마상리	222-2	도	도	874	23	-	거창군			
22	가조면 마상리	238-9	답	답	137	137	부산광역시 영*구 태*로 1** 10*동 *0*호(봉*동, 영* *트*에*린의 *)	이*자			
23	가조면 마상리	236-12	답	답	448	448	경상남도 거창군 **면 **리 *4	이*덕 외 2인			

의견서

1. 제목		가조 수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항 및 제11조 5항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 . .</p> <p>의견제출인 주 소:</p> <p> 성 명: (서명 또는 인)</p> <p> 전화번호:</p> <p>거창군수 귀하</p>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79-115호(1979.05.24.)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가조 수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열람기간 내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6.

거 창 군 수

1. 사업예정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45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거창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가조 수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소로2-188호선 1,094㎡, 소로3-267호선 2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담당부서: 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4년 8월 23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 내 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 3. 6 ~ 2024. 3. 20.
-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1. 소로2-188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2,634	1,094	-	-	-	-	-
1	가조면 수월리	458-9	도로	51	31	-	경상남도			
2	가조면 수월리	457-8	도로	153	61	-	경상남도			
3	가조면 수월리	457-15	전	174	174	-	거창군			
4	가조면 수월리	458-16	전	110	110	-	거창군			
5	가조면 수월리	457-9	전	26	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리 **7	최* 외 2인	근저당	(주)****신 용금고	
6	가조면 수월리	458-14	전	316	316	-	거창군			
7	가조면 수월리	458-19	대	111	11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2길 *4	박*혁	근저당	거창***** 협동조합	
8	가조면 수월리	1376	도로	11,405	48	-	국(국토교통부)			
9	가조면 수월리	488-3	도로	99	33	-	거창군			
10	가조면 수월리	488-7	전	176	176	경기도 의왕시 **동 **7	한국***공사			
11	가조면 수월리	488-9	전	8	8	경기도 의왕시 **동 **7	한국***공사			

2. 소로3-26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03	203	-	-	-	-	-
1	가조면 수월리	456-17	대	53	53	-	거창군			
2	가조면 수월리	457-13	전	150	150	-	거창군			

거창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80-173호(1980.07.14.)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응양면 운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열람기간 내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6.

거 창 군 수

1. 사업예정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3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거창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가조 천주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3,28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담당부서: 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4년 8월 2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 내 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 3. 6 ~ 2024. 3. 20.
-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1. 소로3-12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9,590	3,287					
1	웅양면 죽림리	198-2	도	37	33	-	거창군			
2	웅양면 죽림리	198-3	대	5	5	-	거창군			
3	웅양면 죽림리	200-1	대	3	3	-	거창군			
4	웅양면 죽림리	166-6	대	1	1	거창읍 웅양면 **리 1*5	김*용			
5	웅양면 죽림리	166-5	대	15	15	거창읍 웅양면 **리 1*7	정*호 외 3인			
6	웅양면 죽림리	167-4	전	39	39	거창읍 웅양면 **리 1*7	이*석			
7	웅양면 죽림리	1162	도	1,499	935	-	국(국토교통부)			
8	웅양면 죽림리	195-2	도	166	117	-	거창군			
9	웅양면 죽림리	166-3	도	26	26	-	거창군			
10	웅양면 죽림리	167-2	도	83	50	-	거창군			
11	웅양면 죽림리	167-1	전	33	33	거창읍 웅양면 **리 1*7	이준석			
12	웅양면 죽림리	157	대	217	217	-	거창군			
13	웅양면 죽림리	195-9	도	88	88	-	거창군			
14	웅양면 죽림리	155	대	171	171	-	거창군			
15	웅양면 죽림리	154-3	대	317	317	-	거창군			
16	웅양면 죽림리	154-2	도	20	7	-	거창군			
17	웅양면 죽림리	114-3	도	7	4	-	거창군			
18	웅양면 죽림리	114-4	대	7	7	-	거창군			
19	웅양면 죽림리	144-10	대	58	58	울산 북구 **로 4*9	최*자			
20	웅양면 죽림리	143-3	도	457	231	-	거창군			
21	웅양면 죽림리	144-11	대	47	47	-	거창군			
22	웅양면 죽림리	143-6	전	70	70	-	거창군			
23	웅양면 죽림리	143-4	전	423	423	-	거창군			
24	웅양면 죽림리	120-1	임	7	7	-	거창군			
25	웅양면 죽림리	121-3	도	44	1	-	거창군			
26	웅양면 죽림리	131-3	도	26	2	-	거창군			
27	웅양면 죽림리	132-3	도	86	6	-	거창군			
28	웅양면 죽림리	132-7	전	3	3	-	거창군			
29	웅양면 죽림리	132-5	도	33	33	-	거창군			
30	웅양면 죽림리	132-6	전	22	22	-	거창군			
31	웅양면 죽림리	133-2	도	79	79	-	거창군			
32	웅양면 죽림리	133-3	전	71	71	-	거창군			
33	웅양면 죽림리	146-10	대	3	3	거창군 주상면 **길 *3	김*섭			
34	웅양면 죽림리	146-2	대	199	8	-	국(기획재정부)			
35	웅양면 죽림리	140-8	창	28	28	-	거창군			
36	웅양면 죽림리	140-6	대	33	33	-	거창군			
37	웅양면 죽림리	135-4	도	883	77	-	거창군			
38	웅양면 죽림리	140-7	대	15	15	-	거창군			
39	웅양면 죽림리	1153-12	구	139	1	-	국(농림축산식품부)			
40	웅양면 죽림리	1-1	구	4,130	1	-	국(농림축산식품부)			

의견서

1. 제목		응양면 운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항 및 제11조 5항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 . .</p> <p>의견제출인 주 소:</p> <p style="padding-left: 200px;">성 명:</p> <p style="padding-left: 200px;">전화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50px;">(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거창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9-21호(2019. 02. 28.)로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개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6.

거 창 군 수

1. 사업예정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7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거창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개화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1,46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거창군수(담당부서: 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4년 8월 2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 내 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 3. 6 ~ 2024. 3. 20.
-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1. 소로3-260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440	1,476					
1	가지리	477-2	임야	60	6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길 1*1-*8	이*백			
2	가지리	579-1	대	518	18	-	거창군			
3	가지리	477-3	임야	13	13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길 1*1-*8	이*백			
4	가지리	578-1 (578-4)	답	1,828	3	-	거창군			
5	가지리	578-1 (578-5)	답	1,828	38	-	거창군			
6	가지리	578-3	답	7	7	-	거창군			
7	가지리	577-1	답	126	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1*2	이*순			
8	가지리	577-4 (577-6)	도로	323	56	-	거창군			
9	가지리	577-2 (577-5)	도로	298	28	-	거창군			
10	가지리	576-2 (576-3)	답	588	98	-	거창군			
11	가지리	576-1	대	50	50	-	거창군			
12	가지리	575-1 (575-5)	답	400	112	-	거창군			
13	가지리	575-3	도로	36	36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0	유*용			
14	가지리	572-4 (572-6)	답	26	10	-	거창군			
15	가지리	572-3 (572-5)	도로	229	137	-	거창군			
16	가지리	572-3	대	92	92	-	거창군			
17	가지리	572-2	대	129	129	-	거창군			
18	가지리	571-5 (571-16)	대	425	9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4**	유*성			
19	가지리	571-5	도로	425	335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4**	유*성			
20	가지리	571-11	답	32	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4**	유*성			
21	가지리	571-15 (571-17)	답	6	5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4**	유*성			
22	가지리	571-15	도로	1	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개화2길 4**	유*성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대한 실태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의무를 명시하여 공용차량 운전자와 군민의 안전을 높이고 사고 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함(안 제20조)

나.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를 신설함

- 1) 차량관리부서의 장의 업무에 신설(안 제21조)
- 2)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지도·점검 사항에 신설(안 제27조)

4. 예고기간 : 2024. 3. 4.(화) ~ 3. 24.(일)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재무과)

- 전화번호 : 055) 940-3266 / FAX : 055) 940-3219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40-32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부서 내 회계업무 담당을 집중관리담당으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담당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조 제목 “(차량 관리방법)”을 “(차량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부서는”을 “관리담당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2.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3.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4. 운전원 복무 관리
5.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

②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담당에서 일괄 반영하여 집행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제4호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를 제5호·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4.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에 대한 게시 여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20조(차량 집중관리담당의 지정)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부서 내 회계업무 담당을 집중관리담당으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담당은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p> <p>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 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p> <p>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p> <p>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1조(차량 관리)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2.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3.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4. 운전원 복무 관리 5.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 <p>② 차량관리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담당에서 일괄 반영하여 집행한다.</p> <p>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담당은 해당 차량의 배차 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p> <p>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7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량정수 관리·운영사항 	<p>제27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제4호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2. 차량정비 관리사항</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3. 제2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p>	<p>1. 차량정수 관리·운영사항</p> <p>2. 차량정비 관리사항</p> <p><u>3.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u></p> <p><u>4.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에 대한 게시 여부</u></p> <p>5. 제2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p>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40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 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①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과태료) ① 삭제 <2013. 8.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5. 제39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한 자

7. 제39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징수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

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과태료)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7. 10. 24.>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5. 8. 11.>
9. 삭제 <2017. 10. 24.>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삭제 <2017. 10. 24.>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 13의4. 제34조의3(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 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 15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 22.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2의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⑤ (생략)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유형이 7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형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유형 확대(안 제3조)

1) 현행 :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2) 신설 :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나.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별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 내용 신설함(안 제8조~제10조, 제12조)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정비(안 별표 1,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방 법 : 우편, 팩스(055-940-3629), 이메일(wldud9793@korea.kr)

라. 기 한 : 2024. 3. 25.(월) 18:00까지 도달

마. 주 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안전총괄과)

바. 문의전화 : 055-940-3654

- 붙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1부.
3. [별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각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가. 침수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나. 유실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하천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다. 고립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입·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라. 취약방재시설지구: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

마. 붕괴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바. 상습가뭄재해지구: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

제4조 중 “안”을 “내”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침수위험지구 등”을 “침수위험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붕괴위험지구”를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및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수위험개선지구 등”을 “침수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중전 제8조)제1항제1호 중 “직·간접”을 “직접·간접”으로 “안”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간접”을 “직접·간접”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유실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고립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취약 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12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상습 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가. 침수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p> <p>나. 유실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하천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p> <p>다. 고립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입·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p> <p>라. 취약방재시설지구: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p>

2.~5.(생략)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마. 붕괴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바. 상습가뭄재해지구: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

2.~5.(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6.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3. (생략)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3. (현행과 같음)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 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신 설>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

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신 설>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신 설>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12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별표 1] 침수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거창군청, T. 055-940-0000) 거창군수</p> </div>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div style="margin-right: 10px;">침수위선(적색) →</div>  <div style="margin-left: 10px;">문자로 침수위선 표기</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침수흔적(청색삼각형)</div>  <div style="margin-left: 10px;">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내판(어두운 노랑) 나. 글씨(검정) 다. 침수위선(빨강) 2. 안내판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로 1.2m 나. 세로 1m 내외 3.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4.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내판(어두운 노랑), 나. 글씨(검정), 다. 침수위선(빨강) 라.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으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5.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6.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7.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8.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9.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fff00; text-align: center;"> <p>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거창군청, T. 055-940-0000) 거창군수</p> </div> </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내판 규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로 1.2m 나. 세로 1m 내외 2.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 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3. 색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내판(어두운 노랑) 나. 글씨(검정) 다.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라. 기둥은 노랑색으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4.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 로 함 5.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6.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5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7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 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나·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작 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작 및 설치』 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거창군수

1. 모집개요

- 가. 관련분야 : 식품제조가공, 식품기계, 식품공학, 식품위생, HACCP 등
- 나. 모집방법 : 공고 및 관련분야 공문 발송 등
- 다. 모집기간 : 2024. 3. 6.(수) ~ 3. 13.(수) 18:00 / 8일간
- 라.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수의 3배수)

2. 평가위원(후보자)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 가. 자격요건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가공·유통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 공무원
 - 농식품가공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전문업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농산물 제조가공 공장을 3년 이상 운영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제외대상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자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3. 6.(수) ~ 3. 13.(수) 18:00 / 8일간

나. 접 수 처 : 거창군청 농업기술과 수출유통담당(055-940-8262)
(우 50147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2층)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hmp1234@korea.kr)

※ 우편 및 이메일 발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별첨 참조)

-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2) 보안각서 1부
- 3)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명서류 1부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제안서 평가 예정일 및 장소

가. 평가예정일 : 입찰마감 후 추후결정 및 개별 통보

나. 장 소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 3층 세미나실

5.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

가. 선정인원: 8명(평가위원 7, 예비 평가위원 1)

※ 예비 평가위원 후보 : 평가위원 불참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선정

나. 선정방법: 추첨을 거쳐 ①다빈도 ②고령자 순으로 선발

다. 선정결과: 선정된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통보

(선정일 :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일)

6. 기타사항

-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은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평가완료 시 해촉 된 것으로 봅니다.
- 나. 평가위원 수당은 거창군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농업기술과 수출유통담당(055-940-8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붙임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서식)
- 보안각서(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작 성 자: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본인은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 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거창군수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거창군은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작 및 설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직장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보유현황,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해당사업 종료시점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나, 수집동의 거부 시 평가위원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과 선별포장시스템 제작 및 설치』 사업 종료 시점까지 보관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